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8. 31 선고 2022가단28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

피 고 B(개명전:C)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현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방연지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31.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2. 25.경 피고에게 자신들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E 전 1006㎡에 관하여 기존 채무 75,000,000원과 신규 채무 30,000,000원을 합한 105,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채권최고액을 11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나. 원고 등은 2022. 6.경 피고에게 합계 15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6. 21.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등

원고 등은 2022. 6.경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5,000,000원, 소액 현금 차용금 정산금 10,000,000원, 기존 채무 30,000,000원, 이자 정산금 10,000,000원을 합한 155,000,000원인 줄 알고 피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기존 채무 30,000,000원은 부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21. 7.부터 2022. 4.까지 수령한 이자 합계 3,000,000원을 합한 3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등과 피고는 2022. 6.경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05,000,000원, 소액 현금 차용금 정산금 10,000,000원, 기존 채무 30,000,000원, 이자 정산금 10,000,000원을 합한 155,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었다. 따라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155,000,000원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33,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 등과 피고는 2013년경부터 차용증이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돈 거래를 해왔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월 1부,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월 2부의 이자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 등과 피고는 2022. 6. 21.경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합계 155,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

○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105,000,000원, 별개 채무 원금을 40,000,000원, 이자를 1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상당 금액의 이자 감액해주었다.

○ 원고 등은 피고가 별개 채무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30,000,000원에 대해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과 피고는 차용증 없이 수년간 거래를 해왔으므로 30,000,000원에 대해서만 인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등은 피고가 F로부터 2019. 7. 10. 계금 59,3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원고 등의 요구로 그 중 23,000,000원을 2019. 7. 13. 다시 F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함에도 원고 등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 등은 소외 G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 등이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는바, 소외 G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채무 정산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 등은 소외 G가 2020. 2.경 사망한 이후 원고 등의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던 중 2021. 6.경 피고에게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아닌 채무에 대한 이자를 월 2부에서 월 1부로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2022. 4.까지 월 3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바, 제대로 채무 원금을 계산하지 않고 채무가 있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원고 등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정산에 따른 원고 등의 지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정산 자체가 취소되거나 해제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 등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설령 이 사건 정산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감액해 준 이자에 대한 정산도 함께 효력을 상실하여야 할 것인데 감액된 금액이 원고 등이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선 정 자 명 단

1. A

2. D

끝.

